

2026년 제2회 양산시의회 기간제근로자(비서실) 채용 공고

양산시의회에서는 2026년 제2회 양산시의회 기간제근로자(비서실)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양산시의회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내용
비서실	1명	2026. 8. 6(목) ~ 2026. 12. 31(목)	의장실 비서업무 및 민원 응대 등

2. 지원자격

-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조건

- 가. 전산자격증(컴퓨터, 전산에 한함) 및 운전면허증 보유자
- 나. 공고일 전일로부터 2년 이내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다. 양산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라. 공고일 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산시의회, 양산시청 기간제 근무이력 없는 자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나. 보 수

- 기본급: 82,560원/일, 간식비: 5,000원/일
- 월 ~ 금요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광복절 등) 유급휴일
- 1개월간 개근 시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그 외 사항은 양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채용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등 심사)

- 내부규정에 의함

나. 2차 면접심사 (구술면접 실시)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7. 20.(월) ~ 7. 22.(수)

나. 접 수 처: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55-392-8623)

다. 접수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 방문접수 또는 e-mail

※ 이메일 주소: yaf46@korea.kr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첨부 양식)

마. 공정채용 확인서 1부(첨부 양식)

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첨부 양식)

사. 자격증 및 관련 증서(해당자) 사본 1부

아. 경력증명자료(해당자) 사본 1부

자.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이력 최근 5년 이내)

8.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 7. 29.(수) 14:00 예정(※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일 시: 2026. 7. 31.(금) 14:00
- 장 소: 양산시의회 1층 의회운영위원회실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4.(화) 14:00 예정(※합격자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본 모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 서류상의 착오 기재,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로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최종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고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서접수 기간, 시험 실시일 등 관련 일정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이미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의 추가 접수 없이 재공고에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양산시의회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문의사항은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55-392-8623)으로 연락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기간제근로자(비서실)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의회 의장 귀하

※ 응시번호		제2026-1- 번	응시분야	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한자)		연락처			
주 소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학 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고등학교 이후)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자 격 면 허	취득일자	자 격 증 명		시 행 기 관		비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서

[접수번호 : 제2026-1- 번]

성 명 :

□ 지원동기 및 직무관련 경험.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작성방법

○ 작성매수: 한글 워드프로세서 A4 종/ 2매 이내 (표지 제외)

○ 글 자 체: 휴먼명조 14p 기본 (제목, 소제목 등은 진하게 할 수 있음)

※ 컬러(COLOR)는 사용하지 않음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산시의회의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아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의회위원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이후에

채용예정자: (서명)

양산시|의회|의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양산시의회 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양산시의회의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	----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11 12 13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의회의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